

규제영향분석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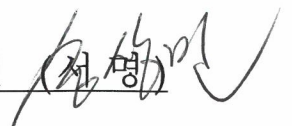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목 차>

1.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관련 비밀유지계약 서류 보존(7년)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공정거래위원회	작성 자	이름	김민지
	담당부서 (과)	기업거래정책과		직급	행정사무관
	국장	송 상 민		연락처	044-200-4584
	과장	박 세 민		이메일	kftc_1044@mail.go.kr

정 책 책 임 자 직 위 기업거래정책국장 성 명 송 상 민

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관련 비밀유지계약 서류 보존(7년)			
	2.규제조문	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			
	3.위임법령	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항			
	4.유형	신설	5.입법예고	'21. 11. 15. ~ '21. 12. 27.	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○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이 신설되어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 계약서 보존 의무 및 보존 기간 등을 명시한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할 필요			
	7.규제내용	○ 비밀유지계약서를 7년간 보존하도록 함 - 하도급법상 발급이 의무화된 서면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부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비밀유지계약 체결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관련 서면을 보존하도록 할 필요 -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(비밀유지계약 체결) 행위에 대한 조사시효가 7년이므로 이에 부합하게 규정하려는 것임			
	8.피 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	○ 피규제집단 : 원사업자 · 수급사업자			
	9.도입목표 및 기대효과	○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의 실효성 확보 - 원 · 수급사업자 간 협상력 차이로 원사업자가 중요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음 - 비밀유지계약 상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 ○ 비밀유지계약 서면을 하도급법상 조사시효와 동일하게 7년 간 보존하도록 하여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도모			
규제의 적정성	10.비용편익분석 (단위:백만원)		비용	편익	순비용
		피규제자	0	0	0
		피규제자 이외	0	0	0
	11.영 향 평 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		중기영향평가
		해당없음	해당없음		해당없음
기타	12.일 몰 설 정 여부	x			
	13. 우선허용 · 사후 규제 적용여부	해당없음			
	14.비용관리제 (단위:백만원)	적용여부	비용	편익	연간균등순비용
		해당없음	0	0	0

〈조문 대비표〉

현행	개정안
제6조(서류의 보존) 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한다. 1. ~ 5의3. (생략) <신설> 7. ~ 8.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(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서류는 7년)간 보존하여야 한다.	제6조(서류의 보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의3. (현행과 같음) 5의4. <u>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4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 서면</u> 7. ~ 8. (생략) ② ----- ------(제1항제5호의3 및 제1항제5호의4)----- -----.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☐ (현황) 하도급법(이하 ‘법’) 제12조의3 제3항을 신설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(‘21. 8. 공포, ‘22. 2. 시행 예정)
- 원·수급사업자간 협상력 차이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기술 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
- ☐ (문제점)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하도급법 시행령(이하 ‘시행령’)을 개정하여 동 계약서를 7년 동안 보존하도록 할 필요

- 보존대상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면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서면 부재로 인해 분쟁해결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
- 현행법상 발급이 의무화된 서면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부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비교

○ 규제대안의 내용

현행유지안	대안명	비밀유지계약서 미보존
	내용	보존 대상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미추가
규제대안1	대안명	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관련 비밀유지계약 서류 보존
	내용	- 보존대상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고, 이를 7년동안 보존하도록 함
규제대안2	대안명	
	내용	

○ 규제대안의 비교

구분	장점	단점
현행유지안	·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부담이 별도로 없음	· 개정 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
규제대안1	·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개정 법의 실효성 확보 가능 · 당사자간 권리의무의 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보관하여 둬으로써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도모	· 보존해야 하는 서류가 추가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음
규제대안2		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- 입법예고를 통해 보존기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
 - 비밀유지계약 서면을 보존하도록 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既 입법예고를 완료(9.14. ~ 10.25.)하였으며,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음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
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

- 비밀유지계약 서면을 조사시효와 동일한 기간(7년)동안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비밀유지계약 체결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

3. 규제목표

- 법 개정을 통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존서류 범위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여 중소기업(수급사업자)의 기술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기대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☐ 법 체계, 개정법의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존서류 대상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고 이를 7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타당한 규제라 할 수 있음
- 법 제3조 제9항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

< 서면 보존 근거 규정 >

제3조(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) 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

- 이에 시행령 제6조에서는 계약서(법 제3조¹⁾), 수령증명서(법 제8조 제2항²⁾), 기술자료요구서(법 제12조의3 제2항³⁾) 등 법적 발급 대상인 서류를 보존 대상 서류로 규정
-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계약서 역시 보존대상에 추가할 필요(법 제12조의3 제3항 신설)
- 법을 개정하여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받기 전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

< 비밀유지계약 체결 근거 규정 >

제12조의3(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)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,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,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,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.

- 또한 조사시효에 맞춰 비밀유지계약서의 보존기간을 7년으로 규정할 필요
-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조사시효에 맞추어 서류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
- 법 제12조의3 위반행위의 조사시효는 7년임

< 조사시효 근거 규정 >

제23조(조사대상 거래의 제한) ①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(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(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. (이하 생략)

- 1) 제3조(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)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(이하 이 항에서 “추가·변경위탁”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
- 2) 제8조(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)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(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)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.
- 3) 제12조의3(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)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, 권리귀속 관계,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.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	시장유인적 규제설계	일몰설정 여부	우선허용· 사후규제
기술	경쟁	중기			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○	×	해당없음

○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
기술기준이나 시험·검사·인증 등과 관계가 없음

- 경쟁영향평가

원사업자간 경쟁 또는 수급사업자간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

- 중기영향평가

비밀유지계약서를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(중소기업)의 기술자료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

○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원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없고 원사업자 간의 경쟁과도 무관한 것으로 보임

- 일몰설정 여부

개정내용은 법에 따라 체결이 의무화된 서면의 보존에 관한 것이므로 일몰 기간을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

- 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여부

해당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○ 해외사례

해당없음

○ 타법사례

가맹법·유통법 등 타 법령에서도 ‘각종 서류의 보존기한’은 ‘공정위 조사 시효’나 ‘처분시효’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.

< 가맹법·유통법 상 조사·처분시효 및 서류 보존기한 >

	조사(처분) 시효	서류 보존기한
가맹법	조사시효 <u>3년</u> (법 §32조)	계약서 보존기한 <u>3년</u> (법 §11조③항)
유통법	처분시효 <u>5년</u> (법 §31조)	계약서 보존기한 <u>5년</u> (법 §6조⑧항)

이는 공정위가 조사·처분과정에서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볼 수 있음

4. 비용편익 분석

<규제대안 1 :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관련 비밀유지계약 서류 보존>

① 비용편익분석 : 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 직접비용 0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(년)	할인율(%)	단위
2021	2022	10	4.5	백만원, 현재가치
규제대안 1 :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관련 비밀유지계약 서류 보존				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		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		
기업순비용			연간균등순비용	

Ⅲ. 규제 의 실효성

1. 규제 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- 계약서 보존에 특별한 인적·물적 자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준수에 어려움이 없으며, 더욱이 수급사업자의 경우 분쟁에 대비하여 자발적으로 보존할 유인이 큼

2. 규제 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- 서면 미보존에 대해서는 조사·제재 등의 법 집행을 해왔으므로 집행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- 기존 집행 인력으로 조사·제재하므로 추가적인 재정지출 요인은 없음

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 예정(22.2.18.)
 - 비밀유지계약서를 7년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추진
 - 비밀유지계약서 보존에 대해서는 既 입법예고(21.9.14. ~ 10.25.)를 완료 하였으며 별도 의견 제기는 없었음
 - 보존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

2. 향후 평가계획

- ☐ 시행령 개정 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할 계획

3. 종합결론

- ☐ 동 개정안을 통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, 관련 사업자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

별첨

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
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21	2022	10	4.5	백만원, 현재가치
규제대안1 :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관련 비밀유지계약 서류 보존				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		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		
기업순비용			연간균등순비용	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 1 :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관련 비밀유지계약 서류 보존>

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:

☐ 직접비용

(정성)세분류	원사업자·수급사업자
활동제목	비밀유지계약서 보존
비용항목	서류 보존 비용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/
분석	기업 내 서류 보존 체계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의 비밀유지계약서를 보존하면 되므로 추가 비용이 크지 않을 것임
근거설명	계약 체결이 빈번한 기업 내에는 서류 보존 체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임

☐ 편익

(정성)세분류	수급사업자
활동제목	비밀유지계약서 보존
편익항목	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/
분석	- 비밀유지계약 서면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분쟁 예방 및 해결 -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
근거설명	비밀유지계약서 보존을 통해 기술자료 관련 분쟁 예방,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구제 및 분쟁 해결 가능